

대전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나12420(본소), 2024나12437(반소) 판결
[원가분담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나12420(본소), 2024나12437(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2가합104840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송중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보조참가인H 주식회사

변론 종결2024. 9. 4.

판결 선고2024. 11. 13.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2가합104840(본소), 2023가합68(반소) 판결

주문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9,364,1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66,721,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1,555,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과 617,808,612원에 대하여 2022. 7. 30.부터 2024. 4. 3.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표 아래 제12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와 제7면 제11~17행까지를 각 삭제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예비적 주장을 철회하였다).

○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토목건축공사 가운데 기계 부분 공동원가의 9%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부담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의 공동원가를 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고가 청구한 공동원가에 대하여 4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공동원가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정별 지분율을 기준으로 분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22. 1.까지도 이 사건 공사의 토목건축공사 중 건축, 토목, 조경 부분에 대한 외주비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원가를 6.51%로 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공동원가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2호증(공사수급운영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자금 청구는 구성원 출자비율로 안분하여 원고가 각 구성원에게 청구하고(제22조 제1항), 각 구성원은 원고로부터 청구된 소요자금을 매월 말일에 원고 지정계좌로 입금하고(제22조 제2항), 각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제22조 제4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토목건축공사 중 건축, 토목, 조경 부분에 대한 분담비율을 6.51%로 하여 계속하여 청구하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순히 계산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오랜 기간 부담비율을 6.51%로 하여 청구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토목건축공사 중 건축, 토목, 조경 부분에 대한 자신의 부담비율을 6.51%로 하여 계속하여 청구하는 바램에 다른 공사 부분에 대한 것도 6.51%로 청구되어 있다고 착각하여 이 사건 공사의 토목건축공사 가운데 기계 부분 공동원가의 9%가 청구되고, 이 사건 공사의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의 공동원가가 청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오랜 기간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따른 공동원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금원을 그대로 납부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 약정된 구성원의 출자비율이 아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정별 지분율에 따라 공동원가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9면 제2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별

채권·채무관계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미 분배된 이익금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을 침해하여 가지고 간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조합채권이 아닌 원고와 피고의 개별 채권·채무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과 피고의 채권은 상계가 가능하다)』

○ 제11면 마지막 행의 '이해청구를'은 '이행청구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동헌

판사이진영

판사이선미